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16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2. 1. 신종갑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: 2023. 2. 6.

다. 상정일자: 제260회 임시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2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신종갑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·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5)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6)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7)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본 조례안은 신중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,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 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가. 제정 취지(적정성/타당성)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, 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‘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하는 것임.

나.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- 2022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내 25개구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.
- “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운영 기본계획”에서 자치구별(기초자치단체) “의용소방대 지원” 조례 제정을 독려

다. 주요 제정내용

○ 조례안의 구성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조례 제정의 목적	제6조	지원 중단
제2조	적용범위	제7조	표창
제3조	지원범위	제8조	준용
제4조	지원절차	제9조	시행규칙
제5조	지도 및 감독	부칙	시행일

○ 조항별 검토

- 안 제1조~제2조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.
- 안 제3조 지원범위 : 「의용소방대법」 제7조(임무)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「의용소방대법」 제1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- 안 제4조 지원절차 등 : 조례안에 명시한 보조금 지원절차를 살펴 보면, 제1항에서 의용소방대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제2항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함.
- 안 제5조 지도 및 감독 : 제1항에서 보조금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,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보조금 사용 내

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반환을 명하도록 함.

※ (안 제4조~제6조)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주요 절차는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(지방보조사업자 공모), 제5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, 제23조(지방보조금 내역의 공시) 등에 따르도록 함.

- 안 제7조 표창 : 의원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재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소방대원들의 인력난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화재, 자연재해 진압·구조·구급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초기 진압 필요성에 따라 비상인력이 필요한 바 의용소방대의 구성은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본 조례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현재 의용소방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제2항 제6호에서 자치(지방)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법적 근거를 각 자치구의 조례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,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 대한 권한을 시·도지사 및 소방서장에 속하게 두고 있어, 사무와 권한의 모호한 경계선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소방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영역에서

기초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임.

-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- 현재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안전 취약지역 순찰,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, 홀몸어르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안전 점검 및 시민안전체험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했으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용소방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76호, 2020. 12. 8. 일부개정]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 2017. 7. 26.>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 2017. 7. 26.>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